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1-18

#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## 판 결

사 건 2023가단254228 배당이의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○

담당변호사 노○○

피 고 1. ○○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
담당변호사 이○○

2.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○○

3.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
담당변호사 강○○

변 론 종 결 2024. 9. 11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1-18

## 청 구 취 지

○ 주위적 청구취지 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23. 11. 15.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4,634,366원을 1,013,072,000원으로,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60,397,331원을521,959,697원으로 각 경정한다.

○ 예비적 청구취지 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23. 11. 15.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4,634,366원을 1,013,072,000원으로, 피고 ○○시에 대한 배당액 378,088,420원을 331,942,542원으로,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273,465,798원을 227,319,920원으로,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60,397,331원을 614,251,453원으로 각 경정한다.

## 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8. 11.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C'이라 한다)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 C 소유의 ○○시 ○○구 E 답 1,190㎡ 및 F 답 1,061㎡(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,17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C,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 ○○시는 2019. 2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, 2019. 4. 17. ○○○○○○공사에 피고 C에 지급하여야 할 G산업단지 H지구 내로 편입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에 관련된 일체의 보상금 중 피고 C의 지방세 체납액 378,088,420원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하고,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1-18

다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B'라 한다)는 2020. 7. 3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4953호로 채무자 피고 C, 제3채무자 ○○○○○○공사, 청구금액 273,465,798원으로 하여 피고 C이 ○○H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○○○○○○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수용보상금, 지장물보상금, 영업손실보상금, 이주비, 농업손실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'이 사건 추심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다.

라. 원고는 2020. 9. 1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5970호로 채무자 피고 C, 제3채무자 ○○○○○○공사, 청구금액 1,013,072,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○○○○○○공사가 시행하는 ○○H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피고 C이 ○○○○○○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(이하 '이 사건 전부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다.

마. ○○○○○○공사와 ○○○○○○공사는 2020. 12. 7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금 제4134호로 2,180,016,440원을 공탁하였는데, 공탁원인사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.

> 공탁자(제3채무자)[1]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인 ○○H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의 시행자로서 동 공사에 편입되는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전액 2,180,016,440원(이하 '이 사건 보상금'이라 한다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체납징수압류, 압류통지 및 지급청구,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,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,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, 채권가압류, 채권압류통지 요청을 송달받았으나, 제3채무자로서는 본건 지급청구여부를 확지할 수 없으므로 집행공탁합니다.

1) ○○○○○○공사와 ○○○○○○공사임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1-18

바. 2021. 5. 21. ○○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/10 지분에 관하여, ○○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/10 지분에 관하여 각 2020. 12. 9.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사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. 11. 15.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(이하 '이 사건 배당절차'라 한다)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,186,585,915원[전체 공탁금에서 배당재단 1(874,634,366원, 사업시행 지분 40%)은 제3채무자가 ○○○○○○공사, 배당재단 2(1,311,951,549원, 사업시행 지분 60%)는 제3채무자가 ○○○○○○공사임] 중 1순위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재단 1 금원 중 874,634,366원을,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○○시에 배당재단 2 금원 중 378,088,420원을, 2순위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피고 B에 배당재단 2 금원 중 273,465,798원을, 3순위로 채무자인 피고 C에 배당재단 2 금원 중 660,397,3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(이하 '이 사건 배당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주위적 청구

○○○○○○공사와 ○○○○○○공사가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제출한 금전공탁서 및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에는 제3채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○○○○○○공사와 ○○○○○○공사를 공동의 공탁자 및 사유신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, ○○○○○○공사와 ○○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도 공동으로 공탁하여 그 채무를 분담한 것이고, 공동시행에서 '공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1-18

동'의 의미는 부진정연대채무 내지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배당표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배당재단 1과 배당재단 2로 나누어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,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채권자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집행채권 1,013,072,000원 전부를 배당받아야 하므로,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4,634,366원은 1,013,072,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,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는 138,437,634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60,397,331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,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60,397,331원은 521,959,69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.[2)]

나. 예비적 청구

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, 피고들은 배당순위가 후순위임에도 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,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4,634,366원은 1,013,072,000원으로, 피고 ◯◯시에 대한 배당액 378,088,420원은 331,942,542원으로,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73,465,798원은 227,319,920원으로,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60,397,331원은 614,251,45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민법 제370조,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.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

2)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60,397,331원을 614,251,45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 사건 소장 주위적 청구취지에는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60,397,331원을521,959,697원으로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, 원고 주장대로 660,397,331원에서 138,437,634원을 공제하면 521,959,697원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청구취지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1-18

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,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,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(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가 채무자 피고 C, 제3채무자 ○○○○○○공사, 청구금액 1,013,072,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○○○○○○공사가 시행하는 ○○H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피고 C이 ○○○○○○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갑 1, 7, 9,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○○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C이 가지는 채권을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, 이 사건 사업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 및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를 제출하였는데, 위 기본협약서 및 실시협약서에 따르면, '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지분율은 ○○○○○공사가 60%, ○○○○○○공사가 40%로 한다.(기본협약서 제3조 제1항)', '사업지분율이라 함은 본 사업관계로부터 생기는 비용과 수입, 손익의 분배비율을 의미하며, 기본협약서에 의거 본 사업을 공동시행함에 있어 ○○○○○○공사의 사업지분율은 60%, ○○○○○○공사의 사업지분율은 40%로 한다.(실시협약서 제2조 제9호).'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1-18

되어 있는 사실, 이에 따라 ○○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/10 지분에 관하여, ○○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/10 지분에 관하여 각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배당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C의 ○○○○○○공사에 대한 보상금채권을 배당재단 1로, 피고 C의 ○○○○○○공사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배당재단 2로 구분하고, 원고에게 배당재단 1에 한하여 배당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○○○○○○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4/10에 해당하는 보상금 채권을, ○○○○○○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 6/10에 해당하는 보상금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, 원고가 그 중 피고 C의 ○○○○○○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만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는 피고 C의 ○○○○○○공사에 대한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.

따라서 배당법원이 배당재단 1에 한하여 원고에게 배당을 하고, 배당재단 2에 관한 배당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,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채권자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 ○○시,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○○